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등 2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의 안 번호 2144

제출연월일 : 2024. 7. 23.

제 출 자:정 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농촌진흥법」에 따른 농촌진흥사업심의위원회와 기능이 중복되는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특화작목위원회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농촌진흥사업심의위원회가 수행하도록 하며, 운영실적이 저조하고 존속할 필요가 없어진 「농업기계화 촉진법」에 따른 농업기계화 정책심의회를 폐지하는 한편,

농업재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두도록하는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른 농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구성・운영할 수 있는 위원회로 전환하고, 해외농업・산림자원개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두도록 하는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에 따른 해외농업・산림자원개발심의회를 관계 행정기관 소속의 공무원으로 구성되는 해외농업・산림자원개발협의회로 전환하는 등의 내용으로 「가축전염병 예방법」 등 23개 법률을 개정하려는 것임.

법률 제 호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등 2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제1조(「가축전염병 예방법」의 개정)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를 다음 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 제목 "(가축방역심의회)"를 "(중앙가축방역수의심의회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가축방역과"를 "가축방역 및 수의인력과"로, "중앙가축방역심의회"를 "중앙가축방역수의심의회"로, "시·도지사"를 "지역의 가축방역과 관련된 주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도지사"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앙가축방역심의회"를 "중앙가축방역수의심의회"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5의2. 「수의사법」 제8조에 따른 수의사 국가시험의 시행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 가. 수의사 국가시험 제도의 개선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나. 수의사 국가시험의 시험문제 출제위원 선정에 관한 사항
 - 다. 수의사 국가시험의 시험문제 출제, 과목별 배점 및 합격자 사정에 관한 사항
 - 라. 그 밖에 수의사 국가시험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중앙가축방역심의회"를 각각 "중앙가축방역수의심의회"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중앙가축방역심의회"로 하며, 같은 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6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중앙가축방역심의회"를 "중앙가축방역수의심의회"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5항"을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7항) 중 "중앙가축방역수의심의회"를 "중앙가축방역수의심의회"를 "중앙가축방역수의심의회"를 "중앙가축방역수의심의회"를 "중앙가축방역수의심의회"를 "중앙가축방역수의

⑤ 중앙가축방역수의심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가축방역수의심의회에 분과위원회를 둘수 있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심의는 중앙가축방역수의심의회의 심의로 본다.

제32조의2제2항 중 "중앙가축방역심의회"를 "중앙가축방역수의심의회"로 한다.

제2조(「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본문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미리 협의한 후 제7조에 따른 간척지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를 "지방자치단체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로 한다. 제7조의 제목 "(간척지운영위원회)"를 "(간척지운영협의회)"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간척지의"를 "농림축산식품부장 관은 간척지의"로,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간척지운 영위원회를 둔다"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간척지운영협의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간척지운영 위원회"를 각각 "간척지운영협의회"로 한다.

제7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그 밖에 간척지운영위원회"를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간척지운영협의회"로 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간척지운영협의회의 구성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간척지운영협의회를 해산할 수 있다. 제3조(「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의 개정)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1항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다른 법령에서 농림식품과학기술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제4조(「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의 개정)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농수산물품질관리협의회)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

산부장관은 농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 소속의 공무원으로 농수산물품질관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수산물 품질관리 등과 관련된 국제동향을 조사·연구하고, 협의회의 협의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는 연구인력을 두어 협의회를 지원하게 할 수있다.
-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협의회의 구성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협의회를 해산할 수 있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를 삭제한다.

제32조제4항 전단 중 "제3조제6항에 따른 지리적표시 등록심의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9항에 따른"을 "제9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제1호 중 "제3조제6항에 따른 지리적표시 등록심의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록을"을 "등록을"로 한다.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 소속으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둔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6항에 따라 심판위원회가 해산되는 경우에는 그 해산되는 때에 임기가 만료되는 것으로 한다.

제42조제6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심판위원회의 구성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판위원회를 해산할수 있다.

제4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이해관계인 또는 제3조제6항에 따른 지리적표시 등록심의 분과위원회는"을 "이해관계인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심판위원회의 위원장"을 "농림축산식품부장 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심판위원회의 위원장"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심판청구서를 제출받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지체 없이 해당 사건을 심판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제4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심판위원회의 위원장"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심판청구서를 제출받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

산부장관은 지체 없이 해당 사건을 심판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제46조제4항 중 "심판위원회의 위원장"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116조제1호를 삭제한다.

제5조(「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개정)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협의"를 "협의 또는 심의"로 하고, 같은 항에 제8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의2. 다른 법령에서 위원회의 협의 또는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 항

제3조제1항 중 "30명"을 "50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획재정부장관·교육부장관·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행정안 전부장관·문화체육관광부장관·농림축산식품부장관·산업통상 자원부장관·보건복지부장관·환경부장관·고용노동부장관·여 성가족부장관·국토교통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중소벤처기업 부장관·국무조정실장·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그 밖에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제7조제4항 중 "협의"를 "협의 또는 심의"로 한다.

제12조의 제목 "(협의 결과의 보고 등)"을 "(협의·심의 결과의 보고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협의"를 "협의 또는 심의"로한다.

제6조(「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의 개정)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전단 중 "제10조에 따른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를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세우고"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세우고"로 한다. 제10조를 삭제한다.

제7조(「농어업재해대책법」의 개정)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재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농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업재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어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농

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 또는 제2항에 따른 어업재해대책 심의위 원회의 구성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 위원회를 해산할 수 있다.

제8조(「농업기계화 촉진법」의 개정)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를 다음 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6조의3을 삭제한다.

제9조(「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의 개정)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장의 제목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 심의위원회"를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 협의회"로한다.

제23조의 제목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 심의위원회의 설치)"를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협의회의 설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심의위원회"를 "협의회"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공익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 불제도 운영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 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협의회의 구성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협의회를 해산할 수 있다.

제24조의 제목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을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심의위원회"를 "협의회"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하되, 연임할 수 있다"를 "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제3항까지의 규정 외에 심의위원회"를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로 한다.

다만, 제23조제3항에 따라 협의회가 해산되는 경우에는 그 해산되는 때에 임기가 만료되는 것으로 한다.

제2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9조(기금운용계획안 수립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매년 「국가 재정법」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42조제2호 중 "심의위원회"를 "협의회"로 한다.

제10조(「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의 개정)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5항 중 "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를 "광역시· 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로 한다.

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제2항, 제3항 및 제5항으로 하

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종전의제1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에 중앙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두고, 시·도"를 "시·도"로, "두며"를 "두고"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에 따른 각급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는 기본계획, 시·도계획"을 "시·도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및 시·군·구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및 시·군·구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를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에 따른 각급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를 "중앙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를 "중앙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를 "중앙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를 한다.

-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 그 밖에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의 발전에 관한 제3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앙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구성·운영할수 있다.
-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중앙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구성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앙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해산할 수 있다.
- 제11조(「농업협동조합법」의 개정) 농업협동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1조의7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7항

및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위하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둔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5항) 중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제3항부터 제6항까지에서"로 한다.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점검 결과에 따라 농협경제지주회사의 임직원에게 경영지도, 자료제출 요구 등 필요 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협의회의 구성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 정하는 경우에는 협의회를 해산할 수 있다.
- 제12조(「농촌진흥법」의 개정) 농촌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다른 법령에서 농촌진흥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제13조(「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정) 도시농업의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3항"을 "제1항"으로 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 제7조(도시농업협의회)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농촌진흥청 및 산림청 등 관 계 행정기관 소속의 공무원으로 도시농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협의회의 구성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협의회를 해산할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4조(「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의 개정) 목재의 지속 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본문 중 "제9조제1항에 따른 지속가능한 목재이용위원회"를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른 탄소흡수원증진 및 목재이용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로한다.

제9조를 삭제한다.

제10조의2제1항 중 "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을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 의 부분 본문 중 "해당하면"을 "해당하면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로 한다.

제10조의3제2항 단서 중 "제10조의4제2항"을 "제10조의4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목재이용위원회"를 "위원회"로 한다.

제10조의4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산림청장은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청에 따라 인증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미리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제17조제3항 및 제4항 중 "목재이용위원회"를 각각 "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산림청장은 제6항에 따른 안전성평가의 기준, 안전성 우수 목재제품 및 안전성 위해 목재제품의 지정기준을 정할 때에는 미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제18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목재이용위원회"를 "위원회"로 한다.

이 경우 해당 기준을 정할 때에는 미리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한다.

제20조제1항 중 "품질 기준을"을 "품질 기준을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로 하고, 같은 조에 제10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산림청장은 제9항에 따른 자체검사사업장의 지정기준을 정할 때에는 미리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제22조제5항 중 "때에는"을 "때에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로 한다.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등을"을 "등을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기준을 정할 때에는 미리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제39조제2호 중 "제10조의4제2항"을 "제10조의4제3항"으로 한다.

제4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목재이용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다음 각 호"를 "다음 각 호"로 한다.

제45조제2항제2호 중 "제10조의4제2항제1호"를 "제10조의4제3항제1호"로 한다.

제15조(「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개정)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본문 중 "제6조제1항에 따른 산림교육심의위원회"를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산림복지심의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로 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산림교육에 관한 사항의 심의) 산림청장은 산림교육에 관한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1. 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 2. 산림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3.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의 지정에 관한 사항
- 4. 산림교육프로그램의 인증에 관한 사항
- 5. 산림교육센터의 설치 및 지정에 관한 사항
- 6. 그 밖에 산림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

항

제8조제3항 중 "제6조제1항에 따른 위원회"를 "위원회"로 한다.

제16조(「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의 개정)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다른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제8조제2항 중 "20명 이상 30명"을 "30명 이상 50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 중 "6명"을 "26명"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분과위원회가 심의하는 경우에는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제17조(「식물신품종 보호법」의 개정) 식물신품종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7조제6항 중 "제118조에 따른 종자위원회"를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제5조의2에 따른 농림식품과학기술위원회 또는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중앙 수산업·어촌정책심의회 로 한다.

제90조제1항 중 "관장하기"를 "관장하고, 품종보호권 침해분쟁을 조정하기"로 한다.

제11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8조(품종보호권의 보호에 관한 자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품종보호권의 보호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제5조의2에 따른 농림식품과학기술위원회 또는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중앙 수산업・어촌정책심의회에 자문할 수 있다.

제11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종자위원회"를 각각 "심판위원회"로 한다.

제1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종자위원"을 "심판위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호 나목 및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 중 "종자위원"을 각각 "심판위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종자위원에게"를 "심판위원에게"로, "종자위원회"를 각각 "심판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종자위원은"을 "심판위원은"으로, "종자위원회"를 "심판위원회"로 한다.

가. 심판위원

제121조제1항, 제122조제1항 및 제123조제1항·제5항 중 "종자위원회"를 각각 "심판위원회"로 한다.

제130조의2 중 "심판위원 및 종자위원"을 "심판위원"으로 한다.

제18조(「식생활교육지원법」의 개정) 식생활교육지원법 일부를 다음 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 전단 중 "국가 식생활 교육 위원회"를 "국가 식생활 교육 혐의회"로 한다.

제18조의 제목 "(국가 식생활 교육 위원회)"를 "(국가 식생활 교육

협의회)"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가위원회"를 "국가협의회"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위원장"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 항 및 제4항 중 "국가위원회"를 각각 "국가협의회"로 한다.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식생활 교육에 관한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 식생활 교육 협의회(이하 "국가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18조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그 밖에 국가위원회"를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가협의회"로 한다.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국가협의회의 구성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가협의회를 해산할 수 있다.

제30조 중 "국가위원회"를 "국가협의회"로 한다.

제19조(「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의 개정) 지역 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다.

제5조제1항 중 "제6조에 따른 지역특화작목위원회"를 "「농촌진흥법」 제6조에 따른 농촌진흥사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로 한다.

제6조를 삭제한다.

제20조(「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의 개정) 축산계열화사업에 관

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축산계열화사업분쟁조정위원회 설치)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은 계열화사업자와 계약농가 간에 발생하는 분쟁을 조정하기 위 하여 필요한 경우 축산계열화사업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 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조정위원회의 구성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를 해산할 수 있다.

제19조제3항 중 "하되 연임할 수 있다"를 "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6조제2항에 따라 조정위원회가 해산되는 경우에는 그 해산되는 때에 임기가 만료되는 것으로 한다.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시·도지사 또는 조정위원회에"를 "시·도지사에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시·도지사또는 조정위원회"를 "시·도지사"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조정위원회에"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로, "회부"를 "회부하여 줄 것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요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지체 없이 해당 사건을 조정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제25조제5항(종전의 제4항) 전단 중 "조정위원회 위원장"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제2항"을 "같은 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종전의 제6항) 중 "제5항 단서"를 "제6항 단서"로 하며,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5항 본문"을 "제6항 본 문"으로 한다.

제25조의2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항제1호 중 "제25조의2제1항"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제25조제1항에따라 분쟁조정의 신청을 받은 날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시·도지사로부터 통보받은"을 "제25조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조정위원회에 회부된"으로 한다.

④ 조정위원회는 제25조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회부된 분쟁이 같은 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 또는 사건인 경우에는 조 정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제28조의2 중 "제16조부터 제28조까지에 규정된 것 외에"를 "제16조, 제17조, 제19조,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 제25조, 제25조의2, 제25조의3 및 제28조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로 한다.

제21조(「축산법」의 개정) 축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를 삭제한다.

제32조제1항 전단 중 "제4조에 따른 축산발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으로 한다.

제32조의2제3항을 삭제한다.

제32조의4제1항 중 "가축"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가축"으로, "자문(諮問)에 응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를 "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둔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이 법에서"를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로 한다.

-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수급조절협의회의 구성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급조절협의회를 해산할 수 있다.
- 제22조(「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의 개정)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본문 중 "탄소흡수원증진위원회"를 "탄소흡수원증진 및 목재이용 위원회"로 한다.

제7조의 제목 "(탄소흡수원증진위원회)"를 "(탄소흡수원증진 및 목재이용 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심의"를 "심의 또는 심사"로, "탄소흡수원증진위원회"를 "탄소흡수원증진 및 목재이용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로 한다.

제7조제1항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다른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 또는 심사를 거치도록 한 사항

제7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에 따른 탄소흡수원증

진위원회"를 "위원회"로 한다.

②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과위원회와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분과위원회가 심의하는 경우에 는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제27조제1항 및 제28조제2항 중 "제7조에 따른 탄소흡수원증진위원회"를 각각 "위원회"로 한다.

제37조의2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2호 및 제3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제23조(「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의 개정) 해외농업·산림자 원 개발협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해외농업자원개발 종합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의2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해외산림자원개발종합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법률 제19756호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일부개정법률 제6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해외농업·산림자원개발협의회)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해

외농업·산림자원개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 소속의 공무원으로 해외농업· 산림자원개발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 1. 해외농업자원개발종합계획 또는 해외산림자원개발종합계획(이 하 "해외농업·산림자원개발종합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에 관한 사항
- 2. 해외농업 · 산림자원에 관한 사항
- 3. 해외농업 · 산림자원의 반입에 관한 사항
- 4. 해외농업·산림자원개발의 경쟁력 강화와 발전 기반 조성을 위한 사항
- 5. 해외농업·산림자원개발 촉진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과한 사항
- 6. 국제농업협력사업 또는 국제산림협력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 7. 그 밖에 해외농업·산림자원개발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농 림축산식품부장관이 부의하는 사항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해외농업·산림자원개발협의회의 구성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외농업·산림자원개발 협의회를 해산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가축전염병 예방법」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중앙가축방역심의회는 같은 법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중앙가축방역수의심의회로 본다.
- 제3조(「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른 간척지운영위원회는 같은 법 제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간척지운영협의회로 본다.
 -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항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간척지운영위원회의 위원은 같은 법 제7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간척지운영협의회의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위촉위원의 임기는 종전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4조(「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3조제4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으로서 임기 중에 있는 위원은 이 법 시행일에 그 임기가 만료된 것으로 본다.
 - ②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 종전의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3조에 따른 농수산물품질관리심의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공무원 의제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116조

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제5조(「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에 따른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 심의위원회는 같은 법 제2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 협의회로 본다.
 -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에 따라 구성된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 심의위원회의 위촉위원은 같은 법 제2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구성된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 협의회의 위촉위원으로 본다. 이 경우 위촉위원의 임기는 종전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③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 종전의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 심의위원회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공무원 의제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42조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제6조(「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관한 경과 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으로서 임기 중에 있는 위원

은 이 법 시행일에 그 임기가 만료된 것으로 본다.

제7조(「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 제9조제2항, 제10조의3제3항, 제17조제3항·제4항 및 제18조제2항에 따라 지속가능한 목재이용위원회에 심의 또는 심사 요청된 사항은 같은 법 제6조제3항, 제10조의2제1항·제2항, 제10조의3제3항, 제10조의4제2항, 제17조제3항·제4항·제7항, 제18조제1항·제2항, 제22조제5항 및 제31조제1항·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탄소흡수원증진 및 목재이용 위원회에 심의 또는 심사요청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 종전의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지속가능한 목재이용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공무원 의제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44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 제6조제1항 및 제8조제3항에 따라 산림교육심의위원회에 심의 요청된 사항은 같은 법 제4조제2항, 제6조 및 제8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복지심의위원회에 심의 요청된 것으로 본다.

- 제9조(「식물신품종 보호법」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67조제6항에 따라 농림종자위원회 또는 수산종자위원회에 심의 요청된 사항은 같은 법 제67조제6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에 따른 농림식품과학기술위원회 또는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에 따른 중앙 수산업・어촌정책심의회에 심의 요청된 것으로 본다.
 -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119조제2항에 따라 농림종자위원회 또는 수산종자위원회에 조정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9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품종보호심판위원회에 조정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 ③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119조제3항에 따라 농림종자위원회 또는 수산종자위원회의 위원장이 조정부에 회부하거나 분쟁 상대방에게 송부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9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품종보호심판위원회의 위원장이 조정부에 회부하거나 분쟁 상대방에게 송부한 것으로 본다.
 - ④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123조제1항에 따라 농림종자위원회 또는 수산종자위원회가 직권조정결정을 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2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품종보호심판위원회가 직권조정결정을 한 것으로 본다.
 - ⑤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123조제5항에 따라 농림종자위원회 또는 수산종자위원회가 이의신청의 상대방에

게 통지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23조제5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품종 보호심판위원회가 이의신청의 상대방에게 통지한 것으로 본다.

- ⑥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 종전의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118조에 따른 농림종자위원회 또는 수산종자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공무원 의제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130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제10조(「식생활교육지원법」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식생활교육지원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국가 식생활 교육 위원회는 같은 법 제1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국가 식생활 교육 협의회로 본다.
 -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식생활교육지원법」 제18조제4항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국가 식생활 교육 위원회의 위원은 같은 법 제18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국가 식생활 교육 협의회의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위촉위원의 임기는 종전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③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 종전의 「식생활교육지원법」 제18조에 따른 국가 식생활 교육 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의 공무원 의제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30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제11조(「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

-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제25조제 1항에 따라 축산계열화사업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신청서를 제 출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2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시·도지사 에게 분쟁조정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에 따라 축산계열화사업분쟁조정위원회가 분쟁조정 신청을 접수하거나 그 접수사실 등을 분쟁당사자에게 통지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25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시·도지사가 분쟁조정 신청을 접수하거나 그 접수사실 등을 분쟁당사자에게 통지한 것으로 본다.
- ③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제25조제3항에 따라 축산계열화사업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 신청의접수사실과 그 검토결과가 통보된 경우에는 같은 법 제25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분쟁조정 신청의 접수사실과 그 검토결과가 통보된 것으로 본다.
- 제12조(「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른 탄소흡수원증진위원회는 같은 법 제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탄소흡수원증진 및 목재이용 위원회로 본다.
- 제13조(「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제6조 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으로서 임기 중에 있는 위원은 이 법 시행일에 그 임기가 만료된 것으로 본다.

제14조(다른 법률의 개정)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를 삭제한다.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해양수산부장관이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를 "해양수산부장관이"로 한다.

제10조제2항을 삭제한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신 · 구조문대비표

혂

제4조(가축방역심의회) ① 가축방 | 제4조(중앙가축방역수의심의회 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 관 소속으로 중앙가축방역심의 회를 두고, 시·도지사 및 특별 자치시장 소속으로 지방가축방 역심의회를 둔다.

② 중앙가축방역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 5. (생략)

<신 설>

개 정 안

역과 관련된 주요 정책을 심의 등) ① 가축방역 및 수의인력과 ----- 중앙가축방역수의

심의회---- 지역의 가축방역 과 관련된 주요 정책을 심의하 기 위하여 시<u>·도지사</u> -----

② 중앙가축방역수의심의회---

1. ~ 5. (현행과 같음)

5의2. 「수의사법」 제8조에 따 른 수의사 국가시험의 시행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수의사 국가시험 제도의 개선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나. 수의사 국가시험의 시험 문제 출제위원 선정에 관 한 사항

다. 수의사 국가시험의 시험 문제 출제, 과목별 배점 및 합격자 사정에 관한 사항 라. 그 밖에 수의사 국가시험

6. (생략)

③ 지방가축방역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지방가축방역심의회의 심의 결 과가 중앙가축방역심의회의 심 의 결과와 다른 경우에는 중앙 가축방역심의회의 심의 결과에 따른다.

1. ~ 5. (생략)

④ <u>중앙가축방역심의회</u>와 지방 가축방역심의회에는 수의(獸醫) ·축산·의료·환경 등 관련 분 야에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을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신 설>

⑤ <u>중앙가축방역심의회</u>에 가축 전염병의 관리 및 방역에 관한 국제동향 및 질병별 방역요령을

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
의에 부치는 사항
6. (현행과 같음)
③
중앙가축방역수의심의회의
중앙
<u>가축방역수의심의회</u> 의
1. ~ 5. (현행과 같음)
④ 중앙가축방역수의심의회
⑤ 중앙가축방역수의심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
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가축
방역수의심의회에 분과위원회
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분과위
원회의 심의는 중앙가축방역수
의심의회의 심의로 본다.
⑥ 중앙가축방역수의심의회

조사·연구할 연구위원을 둘 수 있다.

- <u>⑥</u> 제5항에 따른 연구위원의 임 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 5. (생략)
- ① 중앙가축방역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 림축산식품부렁으로 정하고, 지 방가축방역심의회의 구성 및 운 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 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제32조의2(소해면상뇌증이 발생 한 수출국에 대한 쇠고기 수입 중단 조치) ① (생 략)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 항에 따라 수입을 중단하거나 재개하려는 경우 제4조제1항에 따른 <u>중앙가축방역심의회</u>의 심 의를 거쳐야 한다.

<u>⑦</u> 제6항
1. ~ 5. (현행과 같음)
⑧ 중앙가축방역수의심의회 및
<u> 분과위원회</u>
제32조의2(소해면상뇌증이 발생
한 수출국에 대한 쇠고기 수입
중단 조치) ① (현행과 같음)
②
중앙가축방역수의심의회-
<u>.</u>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을	제5조(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을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①・② (생 략)	①·② (현행과 같음)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종합	3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	
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u>지방자치</u>	<u>지방자치</u>
단체의 장과 미리 협의한 후 제	단체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7조에 따른 간척지운영위원회	
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고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
④ ~ ⑧ (생 략)	④ ~ ⑧ (현행과 같음)
제7조(간척지운영위원회) ① <u>간척</u>	제7조(간척지운영협의회) ① <u>농림</u>
<u>지의</u>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축산식품부장관은 간척지의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간
관 소속으로 간척지운영위원회	<u>척지운영협의회를</u> 구성·운영
<u>를 둔다</u> .	<u>할 수 있다</u>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 ② <u>간척지운영위원회</u>의 위원장 은 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 되며, 위원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 명 이내로 구성한다.
- ③ <u>간척지운영위원회</u>의 위원은 간척지 활용 업무에 관한 전문 적인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 람과 관계 공무원 중에서 농림 축산식품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 촉한다.

<신 설>

① 그 밖에 간척지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간척지운영협의회
③ 간척지운영협의회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간척
지운영협의회의 구성 목적을 달
성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간척지운영협의회를 해산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
정한 사항 외에 간척지운영협의
ই <u>.</u>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의2(농림식품과학기술위원	제5조의2(농림식품과학기술위원
회) ① 농림식품과학기술의 발	ই]) ①
전 및 육성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농림식품과학기술위원회를 둔	
다.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u> <신 설></u>	5의2. 다른 법령에서 농림식품
	과학기술위원회의 심의를 거
	치도록 한 사항
6. (생략)	6.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혀 행

개 정 안

- 제3조(농수산물품질관리심의회의 설치) ① 이 법에 따른 농수산 물 및 수산가공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 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 소속으로 농수 산물품질관리심의회(이하 "심 의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심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6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互選)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 이 위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으로 한다.
 - <u>④</u>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 로 한다.
 - 1. 교육부, 산업통상자원부, 보 건복지부, 환경부, 식품의약품 안전처, 농촌진흥청, 산림청, 특허청, 공정거래위원회 소속 공무원 중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한 사람과 농림축산식품

- 제3조(농수산물품질관리협의회)
 -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필요한경우 관계 행정기관 소속의 공무원으로 농수산물품질관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수산물 품질관리 등과 관련된 국제동향을조사・연구하고, 협의회의 협의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는 연구인력을 두어 협의회를 지원하게 할 수 있다.
 -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협의회의 구성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협의회를 해산할 수 있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 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구성

부 소속 공무원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명한 사람 또는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중 해양수산부장관이 지명한사람

- 2. 다음 각 목의 단체 및 기관의장이 소속 임원·직원 중에서지명한 사람
 - <u>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u> 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 나.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중앙회
 - 다.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 회
 - 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 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 식품유통공사
 - <u>마. 「식품위생법」에 따른</u> 한국식품산업협회
 - 바.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 한 법률」에 따른 한국농 촌경제연구원
 - 사.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

부 소속 공무원 중 농림축산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식품부장관이 지명한 사람 또통령령으로 정한다.

- 한 법률」에 따른 한국해 양수산개발원
- 아.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식품연구원
- 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법」에 따른 한국보건산업 진흥원
- 차.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한국소비자원
- 3.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 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 천한 사람 중에서 농림축산식 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 관이 위촉한 사람
- 4. 농수산물의 생산·가공·유
 통 또는 소비 분야에 전문적
 인 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위촉한 사람
- ⑤ 제4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 ⑥ 심의회에 농수산물 및 농수

산가공품의 지리적표시 등록심 의를 위한 지리적표시 등록심의 분과위원회를 둔다.

- ⑦ 심의회의 업무 중 특정한 분 야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하 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 다.
- 8 제6항에 따른 지리적표시 등록심의 분과위원회 및 제7항에 따른 분야별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은 심의회에서 심의된 것으로 본다.
- ⑨ 농수산물 품질관리 등의 국 제 동향을 조사・연구하게 하기 위하여 심의회에 연구위원을 둘 수 있다.
- ①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 및 분과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심의회의 직무) 심의회는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표준규격 및 물류표준화에관한 사항

<삭 제>

- 2. 농산물우수관리·수산물품질 인증 및 이력추적관리에 관한 사항
- 3. 지리적표시에 관한 사항
- 4.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에 관한 사항
- 5. 농수산물(축산물은 제외한 다)의 안전성조사 및 그 결과 에 대한 조치에 관한 사항
- 6. 농수산물(축산물은 제외한다) 및 수산가공품의 검사에관한 사항
- 7. 농수산물의 안전 및 품질관 리에 관한 정보의 제공에 관 하여 총리령, 농림축산식품부 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 하는 사항
- 8. 제69조에 따른 수산물의 생산・가공시설 및 해역(海域)의 위생관리기준에 관한 사항
- 9.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의 제70 조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 기준에 관한 사항
- <u>10. 지정해역의 지정에 관한 사</u> <u>항</u>
- 11. 다른 법령에서 심의회의 심

의사항으로 정하고 있는 사항
12. 그 밖에 농수산물 및 수산가
공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하여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 제32조(지리적표시의 등록) ① ~ 제
 - ③ (생 략)
 -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 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등록 신청을 받으면 제3조제6항 에 따른 지리적표시 등록심의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9 항에 따른 등록거절 사유가 없 는 경우 지리적표시 등록 신청 공고결정(이하 "공고결정"이라 한다)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 수산부장관은 신청된 지리적표 시가 「상표법」에 따른 타인의 상표(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저촉되 는지에 대하여 미리 특허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⑤・⑥ (생략)
 - ⑦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 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지리적표시의 등록을

∥32조(지리적표시의 등록) ① ~
③ (현행과 같음)
4
제9항에 따
<u>른</u>
<u>.</u>
⑤・⑥ (현행과 같음)
⑦

결정하여 신청자에게 알려야 한 다.

- 1. 제6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 았을 때에는 제3조제6항에 따 른 지리적표시 등록심의 분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록을 거절할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 2. (생략)
- ⑧ ~ ⑩ (생 략)
- 제42조(지리적표시심판위원회) ① 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 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 항을 심판하기 위하여 농림축산 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 관 소속으로 지리적표시심판위 원회(이하 "심판위원회"라 한다)를 <u>둔다</u>.
 - 1. ~ 3. (생략)
 - ② ~ ④ (생 략)
 - ⑤ 심판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 다. <u><단서 신설></u>

1
<u>등록을</u>
2. (현행과 같음)
⑧ ~ ⑩ (현행과 같음)
제42조(지리적표시심판위원회) ①
<u>위하여 필요한 경</u>
<u>\dagger</u>
<u>구성·운영할 수 있다</u> .
1. ~ 3.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u>다만, 제6항에 따라 심판위</u>
원회가 해산되는 경우에는 그
해산되는 때에 임기가 만료되는
것으로 한다.

<신 설>

⑥ (생략)

제43조(지리적표시의 무효심판) 지 기리적표시에 관한 이해관계 인 또는 제3조제6항에 따른 지 리적표시 등록심의 분과위원회는 지리적표시가 다음 각 호의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 1. 2. (생략)
- ② · ③ (생 략)
- ④ 심판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 항의 심판이 청구되면 그 취지 를 해당 지리적표시권자에게 알 려야 한다.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
	양수산부장관은 심판위원회의
	구성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
	하는 경우에는 심판위원회를 해
	산할 수 있다.
	<u>⑦</u> (현행과 같음)
제	43조(지리적표시의 무효심판)
	① <u>이해관계</u>
	인은
	1. · 2.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④ <u>농림축산식품부장관</u> 또는 해
	<u>양수산부장관</u>
	<u>.</u>
제	46조(심판청구 방식) ①

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 1. ~ 6. (생략)
- ② 지리적표시 등록거절에 대한 심판을 청구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심판청구 서에 신청 자료를 첨부하여 심 판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제출하 여야 한다. <후단 신설>

- 1. ~ 5. (생략)
- ③ (생략)
- ④ 심판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 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청구된 심판에 제32조제6항에 따른 지 리적표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이 포함되어 있으면 그 취지를 지리적표시의 이의신청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116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제116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수산부장관---. 이 경우 심판청 구서를 제출받은 농림축산식품 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지체 없이 해당 사건을 심판위 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1. ~ 6. (현행과 같음) 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 산부장관---. 이 경우 심판청구 서를 제출받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지 체 없이 해당 사건을 심판위원 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1. ~ 5.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 양수산부장관-----

의기	쉐) ㄷ	구음	각.	호의	어느	_ 히	-나
에	해딩	하는	- 入	라 음은	<u> </u>	형법	
제1	27조	및	제1	29조	부터	제]	.32
조기	가지의	리 뉴	구정 º	ની ઘ	구른	벌칙	을
적분	용할	때어	는	공두	-원으	으로	본
다.							

제3조에 따른 심의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 9. (생 략)

의제)
<u><삭 제></u>

2. ~ 9. (현행과 같음)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제2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생 략)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	②
을 <u>협의</u> 한다.	<u>협의 또는 심의</u>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u> <신 설></u>	8의2. 다른 법령에서 위원회의
	협의 또는 심의를 거치도록
	<u>한 사항</u>
9. (생 략)	9. (현행과 같음)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u>30명</u>	<u>50명</u>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	
여 구성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	③
의 사람이 된다.	
1. 기획재정부장관, 농림축산식	1. 기획재정부장관 • 교육부장관
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국	<u>•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u>
무조정실장 및 식품의약품안	행정안전부장관 • 문화체육관
<u>전처장</u>	광부장관・농림축산식품부장
	<u>관·산업통상자원부장관·보</u>
	<u>건복지부장관·환경부장관·</u>

2. (생략)

④ (생략)

제7조(회의) ① ~ ③ (생 략)

- ④ 위원장은 상정된 안건의 <u>협</u>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안건과 관련된 관계 행정기관· 공공단체나 그 밖의 기관·단체의 장 또는 민간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12조(협의 결과의 보고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u>협의</u> 결과 등 주요 활동사항을 대통령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②·③ (생 략)

고용노동부장관 • 여성가족부
<u>장관·국토교통부장관·해양</u>
<u>수산부장관·중소벤처기업부</u>
<u>장관·국무조정실장·식품의</u>
약품안전처장과 그 밖에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
<u>관의 장</u>

- 2. (현행과 같음)
- ④ (현행과 같음)

제7조(회의) ① ~ ③ (현행과 같음)

4			 	 <u>협</u>
의	또는	심의-	 	

제12조(협의·심의 결과의 보고 등) ① ----- 협의 또는 심의 -----

② · ③ (현행과 같음)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제5조(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기본계획의 수	농어촌 지역개발 기본계획의 수
립) ① (생 략)	립) ① (현행과 같음)
② 정부는 기본계획을 세울 때	2
에는 <u>제10조에 따른 농어업인</u>	<u>「</u>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	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u>발위원회</u> (이하 "위원회"라 한	제2조에 따른 농어업ㆍ농어촌
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기본	<u>특별위원회</u>
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	
다.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관계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	
에 따라 매년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시행	
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	
다)을 <u>세우고</u> 시행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세
	우고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0조(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u><삭 제></u>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 ① 농	
어업인등의 복지증진, 농어촌의	
교육여건 개선 및 지역개발에	

관한 정책을 총괄·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를 둔다.

-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기본계획
- 2. 전년도 시행계획 추진 실적 에 대한 점검·평가 결과
- 3. 해당 연도 시행계획
- 3의2. 제9조의2제2항에 따른 이 행계획서에 관한 사항
- 4. 농어촌서비스기준 달성 정도
- 5. 그 밖에 농어업인 삶의 질 향 상 및 지역개발 정책 등에 관 하여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 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한다.
- ④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 1. 기획재정부장관·교육부장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문화체육관

광부장관·농림축산식품부장 관·산업통상자원부장관·보 건복지부장관·환경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여성가족부 장관·국토교통부장관·해양 수산부장관·중소벤처기업부 장관·국무조정실장과 그 밖 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 행정기관의 장

- 2. 농어업인 또는 농어업인단체의 대표자와 농어촌의 복지·교육·지역개발 분야에 풍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 ⑤ 제4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⑥ 위원회에 간사위원 1명을 두 되, 간사위원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된다.
- ⑦ 위원회는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 관의 소속공무원 또는 관련 기 관·단체의 임직원의 파견을 요 청할 수 있다.
- ⑧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농림 축산식품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개발실무위원회(이 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 다.

⑨ 위원회의 운영 및 실무위원 회의 구성・기능・운영 등에 관 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 로 정한다.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심의위원회) ① 농업재해에	제5조(심의위원회) ① 농림축산식
관한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	품부장관은 농업재해에 관한 사
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농업재	<u>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u>
해대책 심의위원회를 둔다.	경우 농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
	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어업재해에 관한 사항을 심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업재해
의하게 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	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
에 어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를	여 필요한 경우 어업재해대책
<u>둔다.</u>	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u>있다.</u>
<u><신 설></u>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
	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농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 또는
	제2항에 따른 어업재해대책 심
	의위원회의 구성 목적을 달성하
	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위원회를 해산할 수 있다.
③ (생 략)	<u>④</u> (현행 제3항과 같음)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농업기계화 기본계획의 수	제5조(농업기계화 기본계획의 수
립 등) ①・② (생 략)	립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	<u><삭 제></u>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6조의3에 따른 농업	
기계화 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	
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 ⑦ (생 략)	④ ~ ⑦ (현행과 같음)
제6조의3(농업기계화 정책심의회)	<u><삭 제></u>
① 농업기계화와 농업기계화사	
업의 촉진에 관한 사항 등을 심	
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소속으로 농업기계화 정책	
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	
<u>를 둔다.</u>	
②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을 심의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농업기계화와 농업기계화사	
업의 촉진을 위한 국가 목표	

- 의 설정과 법령·제도의 발전 에 관한 사항
- 3. 농업기계화와 농업기계화사 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 항
- 4. 그 밖에 농업기계화와 농업 기계화사업의 촉진에 관한 중 요한 정책사항으로서 농림축 산식품부장관이 심의를 요청 한 사항
- ③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 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한다.
- ④ 위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차 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에서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 하는 사람이 된다.
- 1. 농업기계화와 농업기계화사 업에 관한 경험이 있는 3급 이 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 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 다)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 람
- 2. 농업기계화와 농업기계화사 업에 관한 전문지식 및 경험

- 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추천하는사람
- ⑤ 심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심의회에 분야별로 분과위 원회를 둘 수 있다.
- ⑥ 심의회 및 분과위원회는 제2 항에 따른 사항을 심의하기 위 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농업인, 농업기계의 제조업자 및 관계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⑦ 심의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농업 · 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 . 구즈무리비ㅍ

<u>~</u> "	1 2 1	네비됴

했

제6장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 제6장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 심의위원회

혀

제23조(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 심의위원회 의 설치) ① 공익직접지불제 운 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 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 으로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 심의위원회 (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 4. (생 략) <신 설>

영)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

직접지불제도 운영 협의회

정

아

개

제23조(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 협의회의 설 치)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공익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 할 수 있다.

- ② 협의회---------.
- 1. ~ 4. (현행과 같음)
-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협의 회의 구성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협의회를 해 산할 수 있다.

제24조(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 제24조(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협의회----

명 :	과	부위	원장	1명을	포	함한	21
명	0	내의	위원	<u></u> 실으로	구기	성한다	7.

- ② (생략)
- ③ 제2항제2호에 따른 위촉위원 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단서 신설>

- ④ 제1항에서 제3항까지의 규정 외에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 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 로 정한다.
- 제29조(기금운용계획안 수립 등) 제29조(기금운용계획안 수립 등)
-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매년 □'국가재정법」에 따라 기금운 용계획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에도 또한 같다.
 -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 안을 수립하거나 기금운용계획 을 변경하려면 심의위원회의 심 의를 거쳐야 한다.
- 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형법」 제127

 	 	 	-	 	 $\overline{}$	_
 	 	 		 	 _	-

- ② (현행과 같음)

·---- 한다. 다만, 제23조제3항에 따라 협의회가 해산되는 경우에는 그 해산되는 때에 임기가 만료되는 것으로 한다.

- ④ ----- 제3항까지에서 규정 한 사항 외에 협의회-----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매년 '국가재정법」에 따라 기금운 용계획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에도 또한 같다.

제42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 제42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 제) -----

3. • 4. (현행과 같음)

3. • 4. (생략)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4조(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제14조(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의 수립) ① ~ ④ (생	발전계획의 수립) ① ~ ④ (현
략)	행과 같음)
⑤ 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⑤
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기본계	
획과 그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	
려하여 <u>광역시·특별자치시·</u>	<u>광역시·특별자치시·</u>
<u>도·특별자치도</u> 농업·농촌 및	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
식품산업 발전계획(이하 "시·	라 한다)
도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시	
행하여야 한다.	
⑥·⑦ (생 략)	⑥·⑦ (현행과 같음)
제15조(정책심의회) <u><신 설></u>	제15조(정책심의회) ① 농림축산
	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 그 밖
	<u>에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의</u>
	발전에 관한 제3항 각 호의 사
	<u>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u>
	경우 중앙 농업ㆍ농촌및식품산
	업정책심의회를 구성・운영할
	<u>수 있다.</u>
① 농림축산식품부에 중앙 농업	② <u>시·도</u>
• 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두고, 시·도에 시·도 농업· 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두며, 시・군 및 자치구에 시・ 군・구 농업・농촌및식품산업 정책심의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각급 농업ㆍ농 | 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는 기 ·구계획, 그 밖에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의 발전에 관한 다 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 3. (생 략) <신 설>

③ 제1항에 따른 각급 농업ㆍ농 촌 및 식 품 산 업 정 책 심 의 회 의 의 |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두고

③ 시·도 농업·농촌및식품산 업정책심의회 및 시・군・구 농 본계획, 시·도계획 및 시·군 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는 시 • 도계획 -----

- 1. ~ 3. (현행과 같음)
-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중앙 농업 · 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 회의 구성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앙 농업 • 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해산할 수 있다.
- ⑤ 중앙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 정책심의회, 시·도 농업·농촌 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및 시· 군・구 농업・농촌및식품산업 정책심의회----.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61조의7(농산물등 판매활성화	제161조의7(농산물등 판매활성화
사업 평가) ① (생 략)	사업 평가) ① (현행과 같음)
<u><신 설></u>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
	항에 따른 평가·점검 결과에
	따라 농협경제지주회사의 임직
	원에게 경영지도, 자료제출 요
	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
	<u>다.</u>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u>③</u>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을 <u>위</u>	위
<u>하여</u> 농협 경제사업 평가협의회	<u>하여 필요한 경우</u>
(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u>둔다</u> .	<u>구성</u>
이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운영할 수 있다. <후단 삭
협의회의 자문 내용을 고려하여	제>
<u> 농협경제지주회사의 임직원에</u>	
게 경영지도, 자료 제출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 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u>③</u> · <u>④</u> (생 략)	<u>④</u> ・ <u>⑤</u> (현행 제3항 및 제4항과
	같음)
<u><신 설></u>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협의
	회의 구성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협의회를 해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 식품부장관이 정한다.

<u>⑥</u> (생 략)

산할 수 있다.
⑦ 제3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
⑧ (현행 제6항과 같음)

농촌진홍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농촌진흥사업심의위원회)	제6조(농촌진흥사업심의위원회)
① 농촌진흥사업에 관한 다음	①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	
여 농촌진흥청에 농촌진흥사업	
심의위원회를 둔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u> <신 설></u>	3의2. 다른 법령에서 농촌진흥
	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
	치도록 한 사항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 ①・②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 ①・②
(생 략)	(현행과 같음)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종합	<u><삭 제></u>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제7조에 따른 도시농업협의회	
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	
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심의	
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u>제3</u>	④ <u>제1</u>
<u>항</u> 에 따라 수립하거나 변경한	<u>항</u>
종합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	
의 장과 특별시장·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	
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생략)	⑤ (현행과 같음)
제7조(도시농업협의회) ① 도시농	제7조(도시농업협의회) ① 농림축
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산식품부장관은 도시농업의 육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	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협의
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행정
로 도시농업협의회(이하 "협의	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
회"라 한다)를 둔다.	부, 국토교통부, 농촌진흥청 및

- 1. 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
- 2. 제6조제2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평가
- 3. 제12조에 따른 도시농업 관련 연구 및 기술개발
- 4. 제20조에 따른 도시농업종합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 5. 그 밖에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서 농림 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농림축산

 식품부차관이 되며,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

 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 1. 도시농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농림축산 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 2. 도시농업과 관련이 있는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안전부, 농 립축산식품부, 환경부, 국토교

- 산림청 등 관계 행정기관 소속 의 공무원으로 도시농업협의회 (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협의 회의 구성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협의회를 해 산할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구성 및 운 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

 통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소

 속의 공무원 각 1명

 ④ 그 밖에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

 령령으로 정한다.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제6조(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산림청장은 종합계획을 수립	3
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관계 중	
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	
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	
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	
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들은 후 제9조	「탄소
제1항에 따른 지속가능한 목재	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
<u>이용위원회</u> 의 심의를 거쳐 확정	률」 제7조제1항에 따른 탄소흡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	수원증진 및 목재이용 위원회
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	<u>(이하 "위원회"라 한다)</u>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9조(지속가능한 목재이용위원	<u><삭 제></u>
회) ① 목재이용을 지속적으로	
활성화하기 위하여 산림청장 소	
속으로 지속가능한 목재이용위	
원회(이하 "목재이용위원회"라	
<u>한다)를 둔다.</u>	
② 목재이용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제6조제3항에 따른 종합계획
 의 심의
- 1의2.제10조의2제1항에 따른목재교육전문가양성기관의지정에 관한 심사
- 1의3.제10조의3제3항에 따른목재교육프로그램의 인증에관한 심사
- 3. 제17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안전성 우수 목재제품의지정 및 안전성 위해 목재제품의품의 지정에 관한 심사
- 4. 제18조제1항에 따른 목재제품 신기술 지정에 관한 심사
- 5. 제20조에 따른 목재제품의 규격·품질 기준의 심사
- 6. 그 밖에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사항 중 농림축 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③ 목재이용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④ 목재이용위원회에는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과 위원회 및 전문위원을 둘 수 있 다.

- ⑤ 목재이용위원회 및 분과위원 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 한다.
- 제10조의2(목재교육전문가 양성 기관의 지정 및 취소 등) ① 산 림청장은 목재교육을 효율적으 로 실시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목재교 육 관련 기관, 시설 또는 단체를 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다만,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1. ~ 3. (생 략)
 - ③ ④ (생 략)
- 제10조의3(목재교육프로그램의 개발·보급 및 인증 등) ① (생략)
 - ② 목재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 거나 개발·보급하려는 자는 농

제10조의2(목재교육전문가 양성
기관의 지정 및 취소 등) ①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목재교육
전문가 양성기관
②
해당하면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1. ~ 3. (현행과 같음)
③・④ (현행과 같음)

제10조의3(목재교육프로그램의

행과 같음)

개발 · 보급 및 인증 등) ① (현

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목재교육 프로그램의 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제5항을 위반하거나 제10조의4제2항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자는 3년간 인증신청을할 수 없다.

③ 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라 신청된 목재교육프로그램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인증기준에 적합하면 목재이용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이를 인증하여야 한다.

④ ~ ⑦ (생 략)

제10조의4(인증의 변경 및 취소) 제 ① (생 략)

<신 설>

② (생략)

제17조(목재제품의 안전성평가 저 등) ①・② (생 략)

③ 산림청장은 안전성평가 결과 안전성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목재제품을 <u>목재이용위원회</u>의

제10조의4제3항
③
<u>위원회</u>
·.
④ ~ ⑦ (현행과 같음)
10조의4(인증의 변경 및 취소)
① (현행과 같음)
② 산림청장은 제1항 본문에 따
른 신청에 따라 인증내용을 변
경할 때에는 미리 위원회의 심
사를 거쳐야 한다.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117조(목재제품의 안전성평가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이이치

심사를 거쳐 안전성 우수 목재 제품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④ 산림청장은 안전성평가 결과 위해요인이 있다고 인정되는 목 재제품을 목재이용위원회의 심 사를 거쳐 안전성 위해 목재제 품으로 지정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목재제품의 생산 및 판매제한 또는 폐기를 명령할 수 있다.

⑤·⑥ (생 략) <신 설>

제18조(목재제품 신기술의 지정) 지 ① 산림청장은 목재제품 제조의 기술향상과 새로운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술을 목재제품 신기술로 지정할 수 있다. <후단 신설>

4
<u>위원회</u>
⑤·⑥ (현행과 같음)
⑦ 산림청장은 제6항에 따른 안
전성평가의 기준, 안전성 우수
목재제품 및 안전성 위해 목재
제품의 지정기준을 정할 때에는
미리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u>한다.</u>
세18조(목재제품 신기술의 지정)
①
<u>이 경우 해당 기준을 정</u>
할 때에는 미리 위원회의 심사
를 거쳐야 한다.

- ② 산림청장이 제1항에 따라 목 재제품 신기술로 지정하려면 한 국임업진흥원의 기술분석과 목 재이용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 ③ ~ ⑤ (생 략)
- 제20조(목재제품의 규격·품질 기 전 준의 고시 및 검사 등) ① 산림 청장은 목재제품의 품질향상, 소비자보호 및 유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 재제품에 대하여 그 규격과 품 질 기준을 고시하여야 한다.
 - ② ~ ⑨ (생 략) <신 설>
- 제22조(규격·품질검사 판정의 취 조 소 등) ① ~ ④ (생 략)
 - ⑤ 산림청장은 제20조제6항에 따른 규격·품질표시가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국민의 안전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제20

②
<u>위</u>
원회
,
③ ~ ⑤ (현행과 같음)
세20조(목재제품의 규격·품질 기
준의 고시 및 검사 등) ①
<u>光</u>
<u>질</u> 기준을 위원회의 심사를 거
쳐
⑩ 산림청장은 제9항에 따른 자
체검사사업장의 지정기준을 정
할 때에는 미리 위원회의 심사
를 거쳐야 한다.
세22조(규격·품질검사 판정의 취
소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5
때에는 위워

조제2항에 따라 목재제품을	생
산한 자 또는 수입한 자에게	회
수를 명할 수 있다.	

⑥ (생략)

- 제31조(기술인력의 양성) ① 산림 청장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 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다음 각 호의 학교・기관 등을 전문인력 양성 기관으로 지정하여 필요한 교육 훈련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 1. ~ 4. (생 략)
 - ②・③ (생략)
 - ④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기 준 및 기술인력의 인정기준 등 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후단 신설>

⑤ (생략)

- 제39조(청문)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 분을 하려면 미리 청문을 하여 야 한다.
 - 1. (생략)

회의 심사를 거쳐
⑥ (현행과 같음)
제31조(기술인력의 양성) ①
등을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 1. ~ 4. (현행과 같음)
1. 4. (년 8년 7년 8년
4)
(1)
시 권 이 기묘 이러 아니
이 경우 전문인력 양성
기관의 지정기준을 정할 때에는
미리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u>한다.</u>
⑤ (현행과 같음)
제39조(청문)
1. (현행과 같음)

- 2. 제10조의4제2항에 따른 목재 교육프로그램의 인증 취소
 3. ~ 12. (생 략)
 제44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목재이용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 1. ~ 5. (생략)

무원으로 본다.

- 제45조(벌칙) ① (생 략)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다.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

- 1. (생략)
- 2. <u>제10조의4제2항제1호</u>를 위반 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 한 방법으로 목재교육프로그 램의 인증을 받은 자
- 3. ~ 13. (생략)

2. <u>제10조의4제3항</u>
3. ~ 12. (현행과 같음)
제44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u>다음 각 호</u>
· 1. ~ 5. (현행과 같음)
제45조(벌칙) ① (현행과 같음) ②
1. (현행과 같음)
2. 제10조의4제3항제1호
3 ~ 13 (혀핹과 간음)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산림교육종합계획의 수립	제4조(산림교육종합계획의 수립
•시행 등) ① (생 략)	·시행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산림청장은 종합계획을 수립	②
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미리 관	
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	
고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	
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특별	
자치시장(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들은 후 <u>제6</u> 조	「산림
제1항에 따른 산림교육심의위	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8조
<u>원회</u> 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제1항에 따른 산림복지심의위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	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
미한 사항은 심의를 거치지 아	
니하고 변경할 수 있다.	
③ ~ ⑦ (생 략)	③ ~ ⑦ (현행과 같음)
제6조(산림교육심의위원회의 설	제6조(산림교육에 관한 사항의 심
치·운영) ① 산림교육에 관한	의) 산림청장은 산림교육에 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위하여 산림청장 소속으로 산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교육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1. 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
라 한다)를 둔다.	<u>항</u>
1. 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	2. 산림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
<u> </u>	에 관한 사항

- 2. 산림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

 에 관한 사항
- 3.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의 지정에 관한 사항
- 4. 산림교육프로그램의 인증에 관한 사항
- 5. 산림교육센터의 설치 및 지 정에 관한 사항
- 6. 그 밖에 산림교육의 활성화 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사항
-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 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한다.
-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산림청 차장이 되고, 위원은 관계 중앙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과 산림 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 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 명 또는 위촉한다.
- ④ 위원회는 산림교육에 관한 전문적인 사항을 조사·연구하 고 제8조제3항에 따른 인증심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 하여 위원회에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 3.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의 지정에 관한 사항
- 4. 산림교육프로그램의 인증에 관한 사항
- 5. 산림교육센터의 설치 및 지 정에 관한 사항
 - 6. 그 밖에 산림교육의 활성화 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사항

- ⑤ 위원회의 구성·운영, 전문 위원의 임면 등에 필요한 사항 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8조(산림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보급 및 인증 등) ①·② (생 략)
 - ③ 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라 신청된 산림교육프로그램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인증기준에 적합하면 제6조제1항에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인증하여야 한다.
 - ④ ~ ⑧ (생 략)

제8조(산림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보급 및 인증 등) ①·② (현
행과 같음)
③
<u>위원회</u>
④ ~ ⑧ (현행과 같음)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산림복지심의위원회의 설	제8조(산림복지심의위원회의 설
치)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	え) ①
의하기 위하여 산림청장 소속으	
로 산림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u><신 설></u>	5의2. 다른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6. (생략)	6.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	②
원장 1명을 포함한 <u>20명 이상 30</u>	<u>30명 이상 50</u>
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u>명</u>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	4
의 사람이 되고, 위원회의 위원	
장은 산림청 차장이 되며, 부위	
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된 사	
람이 된다.	
1. 산림문화・휴양, 산림교육 및	1
치유 분야의 전문가로서 산림	
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u>6명</u> 이	<u>26명</u> -
내	
2. ~ 9. (생 략)	2. ~ 9. (현행과 같음)

(5)	(생	략)
(\ 0	1/

⑥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과위원회와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후단 신설>

$\overline{}$	/ = 3	3 4 1
(に)	(혂행과	71-0-1
	(\ \ \ \ \ \ \ \ \ \ \ \ \ \ \ \ \ \ \	イロリ

6	 	 		 	 	 	
	 	 	_	 	 	 	

⑦ (현행과 같음)

⑦ (생략)

식물신품종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개 정 안 혅 했 제67조(통상실시권 설정의 재정) 제67조(통상실시권 설정의 재정) ① ~ ⑤ (생 략)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 양수산부장관은 재정을 할 때에 는 제118조에 따른 종자위원회 --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 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법」 제5조의2에 따른 농림식품 과학기술위원회 또는 「수산업 • 어촌 발전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중앙 수산업 · 어촌정책심 의회---. 제90조(품종보호심판위원회) ① 제90조(품종보호심판위원회) ① 품종보호에 관한 심판과 재심을 관장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 관장하고, 품종보호권 침해분쟁 부에 품종보호심판위원회(이하 을 조정하기 -----"심판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118조(종자위원회) ① 다음 각 제118조(품종보호권의 보호에 관 호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한 자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해양수산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품종보 부에 농림종자위원회 또는 수산 호권의 보호에 관한 사항에 대 종자위원회(이하 "종자위원회" 하여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 라 한다)를 둔다. 법」 제5조의2에 따른 농림식품 1. 품종보호권의 보호에 관한 과학기술위원회 또는 「수산업

양수산부장관의 자문에 대한 조언

- 2. 제67조에 따른 통상실시권 설정에 관한 재정의 심의
- 3. 품종보호권 침해분쟁의 조정 ② 종자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제90조제2항에 따른 심판위원 회 상임심판위원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이 하 "종자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 ③ 종자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 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 양수산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 촉하며, 위원장은 농림축산식품 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종자위원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 촉한다.
- 1. 3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 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의 직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으로서 종자 관련 업무에 경험이 있는 사람
- 2.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 • 어촌 발전 기본법 』 제8조에 따른 중앙 수산업ㆍ어촌정책심 의회에 자문할 수 있다.

- 의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으로 서 종자 관련 분야를 전공한 사람
- 3. 변호사 또는 변리사 자격이 있는 사람
- 4. 농업단체 · 임업단체 또는 수 산업단체의 임원으로 재직하 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 5. 종자산업과 관련된 협회의 임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 직하였던 사람
- 6.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 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 천한 사람
- ④ 종자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⑤ 종자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19조(분쟁의 조정) ① 품종보 호권 침해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자는 <u>종자위원회</u>에 조정을 신청 할 수 있다.

제119조(분쟁의 조정) ①	
<u>심판위원회</u>	
.	

- ② 제1항에 따라 조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조정신청서를 <u>종자위원회</u>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조정신청서를 받은 <u>종자위원회</u>의 위원장은 필 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항 의 조정부에 회부하고, 그 조정 신청서의 사본을 분쟁 상대방에 게 송부하여야 한다.
- ④ 제1항에 따른 조정신청을 받은 <u>종자위원회</u>는 3명의 위원으로 조정부를 구성할 수 있으며 조정신청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재배시험이 필요한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 ⑦ (생 략)

- 제120조(위원의 제척 등) ① <u>종자</u> 저 <u>위원</u>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 정에서 제척된다.
 - 1. 다음 각 목의 사람이 해당 분쟁의 당사자가 되거나 당사자

②
<u>심판위원회</u>
③
<u>심판위원회</u>
4
<u>심판위원회</u>
,
 (취원기 기수)
⑤ ~ ⑦ (현행과 같음)
세120조(위원의 제척 등) ① <u>심판</u>
위원
1
ı.

- 와 공동 권리자 또는 의무자 의 관계에 있는 경우 <u>가. 종자위원</u>
- 나. <u>종자위원</u>의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
- 2. <u>종자위원</u>이 해당 분쟁의 당 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 던 경우
- 3. <u>종자위원</u>이 해당 분쟁에 관하여 증언이나 감정을 한 경우
- 4. <u>종자위원</u>이 해당 분쟁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고 있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 ② <u>종자위원에게</u> 공정한 직무집 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당사자는 <u>종자위원</u> 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u>종자위원회</u>는 기피신청이 타당 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피의 결정을 한다.
- ③ <u>종자위원은</u> 제1항 또는 제2 항의 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u>종</u> <u>자위원회</u>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회피할 수 있다.

가. 심판위원
나. <u>심판위원</u>
2. 심판위원
3. 심판위원
4. 심판위원
② 심판위원에게
심판위원
<u>ই</u>
<u>심판위원회</u>
③ 심판위원은
<u>심</u>
<u> 판위원회</u>

제121조(자료 요청 등) ① <u>종자위</u>
<u>원회</u> 는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농림축신
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
는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자료
나 의견의 제출, 재배시험, 유전
자 검사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
할 수 있다.

② (생략)

제122조(출석의 요구) ① <u>종자위</u> 원회는 필요한 경우 당사자나 그 대리인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출석을 요구하거나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 ④ (생 략)

제123조(직권조정결정) ① <u>종</u>자위 원회는 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 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또는 신 청인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판 단되는 경우에는 당사자들의 이 익과 그 밖의 모든 사정을 고려 하여 신청 취지에 반하지 아니 하는 한도에서 직권으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하 "직권조정 결정"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 ~ ④ (생 략)

제121조(자료 요청 등) ① <u>심판위</u>
원회
,
② (현행과 같음)
제122조(출석의 요구) ① <u>심판위</u>
<u>원회</u>
·
② ~ ④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23조(직권조정결정) ① <u>심판위</u>
② ~ ④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23조(직권조정결정) ① <u>심판위</u>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23조(직권조정결정) ① <u>심판위</u>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23조(직권조정결정) ① <u>심판위</u>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23조(직권조정결정) ① <u>심판위</u>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23조(직권조정결정) ① <u>심판위</u>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23조(직권조정결정) ① <u>심판위</u>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23조(직권조정결정) ① <u>심판위</u>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23조(직권조정결정) ① <u>심판위</u>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23조(직권조정결정) ① <u>심판위</u> 원회
① ~ ④ (현행과 같음) 제123조(직권조정결정) ① <u>심판위</u>

⑤ 제4항의 기간 내에 이의신청이 있을 때에는 <u>종자위원회</u>는이의신청의 상대방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130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의제) 심판위원 및 종자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2)
<u>심판위원회</u>
제130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u>심판위원</u>

식생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4조(식생활 교육 기본계획의	제14조(식생활 교육 기본계획의
수립) ①・② (생 략)	수립) ①·② (현행과 같음)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	③
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제18조	
에 따른 <u>국가 식생활 교육 위원</u>	국가 식생활 교육 협의
<u>회</u> 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기본	<u> ই</u>
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	
다.	
④・⑤ (생 략)	④·⑤ (현행과 같음)
제18조(국가 식생활 교육 위원회)	제18조(국가 식생활 교육 협의회)
① 식생활 교육에 관한 제2항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식생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	활 교육에 관한 제2항 각 호의
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으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로 국가 식생활 교육 위원회(이	경우 국가 식생활 교육 협의회
하 "국가위원회"라 한다)를 둔	(이하 "국가협의회"라 한다)를
<u>다.</u>	<u>구성·운영할 수 있다.</u>
② <u>국가위원회</u> 는 다음 각 호의	② <u>국가협의회</u>
사항을 심의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그 밖에 식생활 교육 지원을	4
위하여 필요하다고 <u>위원장</u> 이	<u>농림축산</u>
인정한 사항	식품부장관
③ 국가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③ 국가협의회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국가위원회의 위원장은 농림 축산식품부장관과 호선된 민간 위원이 되고, 위원은 관계 중앙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과 식생 활 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신 설>

⑤ <u>그 밖에 국가위원회</u>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0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 저제) 제18조에 따른 <u>국가위원회</u>의 위원과 제20조에 따른 시·도위원회의 및 시·군·구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과 제29조에 따라 권한의 위임·위탁을 받은 사람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경우에는

<u>.</u>
④ <u>국가협의회</u>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국가
협의회의 구성 목적을 달성하였
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가협
의회를 해산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
정한 사항 외에 국가협의회
세30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
제) <u>국가협의회</u>

고口	구원	Òi	\supset	サト	·L
0 ~	厂ゼ		工 `	亡し	丁.

----**.**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농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촌진흥청장은 지역특화작목의	
연구개발 및 육성을 위하여 <u>제6</u>	
조에 따른 지역특화작목위원회	촌진흥법」 제6조에 따른 농촌
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지역특	진흥사업심의위원회(이하 "위
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	<u>원회"라 한다)</u>
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	
라 한다)을 수립하고, 매년 연도	
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	
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6조(지역특화작목위원회) ① 지	<u><삭 제></u>
역특화작목의 연구개발 및 육성	
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농촌진	
흥청에 지역특화작목위원회(이	
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	
<u>· 시행에 관한 사항</u>	
2. 제8조에 따른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장

- 기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 3. 그 밖에 농촌진흥청장이 위 원회의 목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30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고려하여야 한다.
- ③ 위원장은 농촌진흥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원장이 지명한다.
-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 촉한다.
- 1. 광역시·도·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 변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행정부시장·행정부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에 따른 농업기술원장
- 2.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 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 3. 지역특화작목 관련 법인·단 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 지역특화작목에 관한 전문지 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제1항의 심의·조정 및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 · 구조문대비표

혅 했

개 정 안

제16조(축산계열화사업분쟁조정 제16조(축산계열화사업분쟁조정 위원회 설치) ① 계열화사업자 와 계약농가 간에 발생하는 분 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농림축산 식품부에 축산계열화사업분쟁 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 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조정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 을 위하여 위원회에 가축의 종 류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 며,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 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9조(조정위원회의 구성 등) ① · ② (생 략)

③ 조정위원회 위원은 비상임으 로 하고,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서 신설>

④·⑤ (생 략) 제25조(분쟁조정의 신청 등) ① 제25조(분쟁조정의 신청 등) ①

위원회 설치) ① 농림축산식품 부장관은 계열화사업자와 계약 농가 간에 발생하는 분쟁을 조 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축 산계열화사업분쟁조정위원회 (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구성 · 운영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조정 위원회의 구성 목적을 달성하였 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정위 원회를 해산할 수 있다.

제19조(조정위원회의 구성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다만. 제16조제2항에 따라 조정 위원회가 해산되는 경우에는 그 해산되는 때에 임기가 만료되는 것으로 한다.

④·⑤ (현행과 같음)

제17조 각 호와 관련된 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계약농가 또는 계열화사업자는 농림축산 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 재한 서면(이하 "분쟁조정신청 서"라 한다)을 관할 <u>시·도지사</u> 또는 조정위원회에 제출함으로 써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 1. ~ 6. (생략)
- ② 시·도지사 또는 조정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분쟁조정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 각호의 행위 또는 사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접수하고, 지체 없이 그 접수사실 등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바에 따라 분쟁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③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분쟁조정의 신청이 접수된 때에 는 제2항에 따른 검토결과를 분 쟁조정신청서 사본에 첨부하여 그 접수일부터 10일 이내에 조

<u>시·도지사</u>
에게
1. ~ 6. (현행과 같음)
② <u>시·도지사</u>
<u>.</u>
③

정위원회에 통보하고, 분쟁 당사자 간에 합의를 권고할 수 있으며, 20일 이내의 기간 중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때에는지체 없이 조정위원회에 <u>회부</u>하여야 한다.

<신 설>

④ 조정위원회 위원장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라 시·도지사로부터 통보받은 분쟁조정신청의 내용·성격 및 정도등을 고려하여 신속한 조치가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도지사의 합의 권고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조정위원회에 직권으로 회부할 수 있다. 이 경우관할 시·도지사에게 그 사실을통지하여야 한다.

⑤ (생략)

⑥ 제5항 단서의 경우에 6개월 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 참가,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u> </u>
회부하
여 줄 것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에게 요청
④ 제3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지체 없
이 해당 사건을 조정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같은 항
,
<u>⑥</u> (현행 제5항과 같음)
<u>⑦</u> 제6항 단서

을 한 때에 시효는 최초의 분쟁 조정의 신청으로 인하여 중단된 것으로 본다.

- ① 제5항 본문에 따라 중단된 시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때부터 새로이 진 행한다.
- 1. · 2. (생략)

제25조의2(분쟁의 조정 등) ① ~ ③ (생 략)

- ④ 조정위원회는 제2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 또는 사 건에 대하여는 조정신청을 각하 하여야 한다. 시·도지사가 제25 조제3항에 따라 통보한 분쟁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 ⑤ 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조정을 종료한다.
- 1. 분쟁당사자가 <u>제25조의2제1</u> <u>항</u>에 따른 조정위원회의 권고 또는 조정안을 수락하거나 조 정합의서를 제출하는 등 조정 이 성립된 경우
- 2. <u>제25</u>조제1항에 따라 분쟁조 정의 신청을 받은 날 또는 같

<u>⑧</u> 제6항 본문
1. • 2. (현행과 같음)
제25조의2(분쟁의 조정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조정위원회는 제25조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회부된 분쟁
이 같은 조 제1항 각 호에 해당
하는 행위 또는 사건인 경우에
는 조정신청을 각하하여야 한
다.
(5)

·
1 <u>제1항</u>
2. 제25조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조정위원회에 회부된

은 조 제3항에 따라 시·도지 사로부터 통보받은 날부터 30 일(분쟁당사자 쌍방이 기간연 장에 동의한 경우에는 60일로 한다)이 경과하여도 조정이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

3. • 4. (생략)

⑥·⑦ (생 략)

제28조의2(조정위원회의 운영 등)
<u>제16조부터 제28조까지에 규정</u>
<u>된 것 외에</u> 조정위원회의 구성
·운영·조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
품부렁으로 정한다.

3.・4. (현행과 같음)

 ⑥・⑦ (현행과 같음)

제28조의2(조정위원회의 운영 등) 제16조, 제17조, 제19조, 제21조 부터 제23조까지, 제25조, 제25 조의2, 제25조의3 및 제28조에 서 규정한 사항 외에 -----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축산발전심의위원회) ①제3	<u><삭 제></u>
조에 따른 축산발전시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	
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축산발	
전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자로	
구성한다.	
1. 관계 공무원	
2. 생산자·생산자단체의 대표	
3. 학계 및 축산 관련 업계의 전	
<u>문가 등</u>	
③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u>있다.</u>	
④ 그 밖에 위원회 및 분과위원	
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령으로 정한다.	
제32조(송아지생산안정사업) ①농	제32조(송아지생산안정사업) ①-
림축산식품부장관은 송아지를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하고 소	

사육농가의 생산기반을 유지하기 위하여 송아지의 가격이 제4조에 따른 축산발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할 경우 송아지 생산농가에 송아지생산안정자금을 지급하는 송아지생산안정자금을 지급하는 송아지생산안정사업을 실시한다. 이 경우 송아지생산안정사업의 대상이 되는 소의 범위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② ~ ⑥ (생 략)

제32조의2(국가축산클러스터의 저 지원·육성) ①·② (생 략)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종합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는 위원 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 ⑧ (생 략)

제32조의4(축산물수급조절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등) ① <u>가축</u> 및 축산물(「낙농진흥법」 제2조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원유 및 유제품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수급조절 및 가격 안정과 관련된 중요 사항에 대

<u>농림</u>
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u>.</u>
② ~ ⑥ (현행과 같음)
세32조의2(국가축산클러스터의
지원・육성) ①・② (현행과 같
승.)
<u><삭 제></u>
④ ~ ⑧ (현행과 같음)
세32조의4(축산물수급조절협의회
의 설치 및 기능 등) ① <u>농림축</u>
산식품부장관은 가축

한 <u>자문(諮問)에 응하기 위하여</u> <u>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u> 축산물수급조절협의회(이하 "수급조절협의회"라 한다)를 <u>둔</u> <u>다</u>.

②·③ (생 략) <신 설>

④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급조절협의회의 구성·운영 에 관한 세부사항과 축종별 소 위원회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u>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u>
<u>7</u>
성・운영할 수 있다.
②・③ (현행과 같음)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수급
조절협의회의 구성 목적을 달성
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
급조절협의회를 해산할 수 있
<u>다.</u>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탄소흡수원 증진 종합계획	제5조(탄소흡수원 증진 종합계획
의 수립 등) ①・② (생 략)	의 수립 등) ①·② (현행과 같
	승)
③ 산림청장이 종합계획을 수립	③
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미리 관	
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	
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	
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	
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관련 이해관계자의 의	
견을 들은 후 제7조에 따른 <u>탄</u>	<u>탄</u>
소흡수원증진위원회의 심의를	소흡수원증진 및 목재이용 위원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	<u> </u>
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	
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7조(탄소흡수원증진위원회) ①	제7조(탄소흡수원증진 및 목재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u>심의</u> 하기	<u>용 위원회)</u> ① <u>심의 또는</u>
위하여 산림청에 <u>탄소흡수원증</u>	<u>심사</u> <u>탄소흡수원증</u>
<u>진위원회</u> 를 둔다.	진 및 목재이용 위원회(이하
	<u> "위원회"라 한다)</u>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신 설>

7. (생 략) <신 설>

② 제1항에 따른 탄소흡수원증 진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임면 (任免),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 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산림탄소상쇄 운영 등에 관한 표준) ① 산림청장은 이 법에 따른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 활동에 적용할 수 있도록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 및 관련 국제규범에 적합하도록 운영표준을 작성하여 제7조에 따른 탄소흡수원증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고

6의2. 다른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 또는 심사를 거치도록
한 사항
7.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과위원회와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에 대하
여 분과위원회가 심의하는 경우
에는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위원
회의 심의로 본다.
③ 위원회
<u>.</u>
제27조(산림탄소상쇄 운영 등에
관한 표준) ①
<u>위원회</u>

시하여야 한다.

- ② (생략)
- 제28조(산림탄소흡수량의 측정· 보고·검증) ① (생 략)
 -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측정·보고·검증된 산림탄소흡수량을 제7조에 따른 탄소흡수원증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 후 산림탄소등록부에 등록하고 매년 공표하여야 한다.
 - ③ ④ (생 략)
- 제37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신 설>

<u>1</u>.·<u>2</u>.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제28조(산림탄소흡수량의 측정・
보고·검증) ① (현행과 같음)
②
<u>위원회</u>
③・④ (현행과 같음)
제37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1.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2.· <u>3</u> . (현행 제1호 및 제2호와
같음)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혀 행

제5조(해외농업자원개발종합계획 의 수립) ①·② (생 략)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해외 농업자원개발종합계획을 제6조 에 따른 해외농업·산림자원개 발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 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④ (생략)

제5조의2(해외산림자원개발종합 계획의 수립) ①·② (생 략)

③ 산림청장은 해외산림자원개 발종합계획을 제6조에 따른 해 외농업·산림자원개발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이를 공 고하여야 한다.

④ (생 략)

법률 제19756호 해외농업·산림 자원 개발협력법 일부개정법률 제6조(해외농업·산림자원개발심 의회의 설치·운영) ① 해외농 업·산림자원개발에 관한 다음 개 정 안

제5조(해외농업자원개발종합계획의 수립) ①·② (현행과 같음)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 항에 따라 수립한 해외농업자원 개발종합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④ (현행과 같음)

제5조의2(해외산림자원개발종합 계획의 수립)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 립한 해외산림자원개발종합계 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④ (현행과 같음)

법률 제19756호 해외농업·산림
자원 개발협력법 일부개정법률
제6조(해외농업·산림자원개발협
의회)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해외농업·산림자원개발에 관

-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 여 농림축산식품부에 해외농업 · 산림자원개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 1. 해외농업자원개발종합계획 또는 해외산림자원개발종합계 획(이하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종합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에 관한 사항
- 2. 해외농업·산림자원에 관한사항
- 2의2. 해외농업·산림자원의 반 입에 관한 사항
- 3. 해외농업·산림자원개발의경쟁력 강화와 발전 기반 조성을 위한 사항
- 4. 해외농업·산림자원개발 촉

 진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

 원에 관한 사항
- 4의2.
 국제농업협력사업
 또는

 국제산림협력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 5. 그 밖에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
 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부

- 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 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 정기관 소속의 공무원으로 해외 농업·산림자원개발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 1. 해외농업자원개발종합계획 또는 해외산림자원개발종합계 획(이하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종합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에 관한 사항
- 2. 해외농업·산림자원에 관한 사항
- 3. 해외농업·산림자원의 반입 에 관한 사항
- 4. 해외농업·산림자원개발의 경쟁력 강화와 발전 기반 조 성을 위한 사항
- 5. 해외농업·산림자원개발 촉진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 6. 국제농업협력사업 또는 국제

 산림협력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 7. 그 밖에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

 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부

- 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 의하는 사항 한 1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한다.
-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 는 공무원
- 2. 해외농업 · 산림자원개발과 관련이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관계 기관이 추천한 사 람
- 3. 해외농업·산림자원개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④ 위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차 관이 된다.
-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수는 재적위원 과반수로 하고, 그 임 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 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 ⑥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 ⑦ 그 밖에 심의회의 구성 및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해외 농업 · 산림자원개발협의회의 구성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 하는 경우에는 해외농업ㆍ산림 자원개발협의회를 해산할 수 있 다.

[별지 제1호서식]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기축전염병 예방법 등 2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 본 법률안은 법령·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등에 따라 이미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위원회의 정비(폐지, 폐지후 비상설화, 통합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서 추가적인 재 정수반 요인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함

Ⅱ.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 O「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제3조제1항제1호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0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0억원 미만인 경우

2. 상세 사유

- 본 법안에 따라 정비되는 위원회(26개)는 비용 수반 없거나(폐지 2개), 기발생비용 (폐지후 비상설화 12개, 통합 12개)에 해당함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함
- 폐지(2개): 농업기계화정책심의회(안 제8조), 축산발전심의회(안 제21조)
- 비상설화(12개): 간척지운영위원회(안 제2조), 농수산물품질관리심의회(안 제4조), 지리 적표시심판위원회(안 제4조), 농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안 제7조), 농업·농촌공익기능증 진직접지불제도운영심의위원회(안 제9조), 중앙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안 제10조), 농협경제사업평가협의회(안 제11조), 도시농업협의회(안 제13조), 국가식생활교육위원회(안 제18조), 축산계열화사업분쟁조정위원회(안 제20조), 축산물수급조절협의회(안 제21조), 해외농업·산림자원개발심의회(안 제23조)
- 통합(12개): 중앙가축방역심의회와 수의사국가시험위원회 통합(안 제1조), 농림식품과학기술위원회와 농림종자위원회 통합(안 제3조, 안 제17조),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와 농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어촌지역개발위원회 통합(안 제5조, 안 제6조), 농촌진흥사업심의회와 지역특화작목위원회 통합(안 제12조, 안 제19조), 탄소흡수및목재이용증진위원회와 지속가능한목재이용위원회 통합(안 제14조, 안 제22조), 산림복지심의위원회와 산림교육심의위원회 통합(안 제15조, 안 제16조)

Ⅲ. 부대의견

○ 이 법률안은 법령·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등에 따라 이미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위원회의 정비(폐지, 폐지후 비상설화, 통합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서 추 가적인 재정수반 요인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함

Ⅳ. 작성자

O 성명

주무관	사무관(서기관)	과장	실장•국장
지하늘	백승인	김지현	강형석·김정주

O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백승인	044-201-1350	plusplus3@korea.kr